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82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 11846호, 2013. 5. 28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개정)

-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장을 산업정책 실장으로 변경

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관변경 및 관련업무를 추가함(안 제8조 개정)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관을 기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
- 신설되는 공단이 전통시장 지원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공단소속 지원센터 업무에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업무 신설

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라. 기금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수탁기관의 기금 운용·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함

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신설)

-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중기청 차장, 위원은 중기청 기금담당 고위공무원, 기금 또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2년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8922, Fax : 042-472-695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을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에는 10인”을 “경우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는 5인”을 “경우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및 그”를 “및 인원”으로, “제5조의 규정을”을 “제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을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지원계획의”를 “지원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획연도 개시”를 “계획연도가 시작되기”로, “이를”을 “그 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료된 후 1월”을 “끝난 후 1개월”로 한

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을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건축물의”를 “건축물에서”로, “면적을 말한다”를 “면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수도권지역”을 “따른 수도권”으로, “각층의”를 각각 “각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 각층의”를 “건축물의 각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개시”를 “시작”으로, “당해”를 “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경제실장”을 “산업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 가.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다.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 라.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3항 중 “제2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2항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정으로”를 “사유로”로,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위원회의”로, “1인을 두되”를 “1명을 두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소상공인에 대한”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창업 및”을 “창업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원

제8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과”로,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조금) 법 제10조의9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소상공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에</u> ----- -----.</p>
<p>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u>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u>”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u>10인</u> 미만</p> <p>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u>5인</u> 미만</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u></p>	<p>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 ----- <u>“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u>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 <u>경우 10명</u> -----</p> <p>2. ----- <u>경우 5명</u> ----- -----</p> <p>② <u>제1항에 따른</u> ----- ----- <u>및 인원</u> ----- ----- ----- <u>제5조를</u> -----.</p>

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

-----.

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

----- 지원계획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

②-----

----- 계획연도가 시작되기 ----- 그 계획을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

③-----

--- 끝난 후 1개월 -----

제3조의2(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

----- 경우만 -----
해당한다) -----

----- 건축물에서 -

--- 면적으로 한다. -----

1. -----
따른 수도권-----

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

각층 -----

각층 -----

2. -----

----- 건
축물의 각층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

-----.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장

<신설>

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② -----

----- 사람이 -----.

1. (현행과 같음)

2. ----- 산업정책실장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1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
촉하는 자 5명

12. (생략)

③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
촉하는 사람 5명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다.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
관이나 단체의 장

라.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
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12.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세칙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위원장-----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유로 -
----- 없을 때-----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에 위원회의 -----
----- 1명을 두

-----.

제6조(운영세칙등) ①-----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
-----.

-----.

②----- 위
원회 운영에 -----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2.·3. (생략)

<신설>

-----.

제7조(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

-----.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

-----.

②-----
-----.

1. ----- 창업과 -----

2.·3. (현행과 같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신 설>

5. -----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제1항과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9조(보조금) 법 제10조의9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신 설>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소상공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